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 소속기관인 중앙119구조본부에 신규 도입한 소방헬기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5명(소방위 1명, 소방장 1명, 소방교 2명, 소방사 2명, 전문경력관 가군 4명, 전문경력관 나군 5명)을 증원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소방청과 소속기관에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소방청과 소속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6년 8월 31일까지 존속하는 구급역량개발팀을 신설하고, 소방청 정원 7명(소방경 3명, 소방위 4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소방령 3명, 소방경 4명)하며, 소속기관 정원 2명(소방위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소방경 2명)하되, 소방청 기획조정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교육훈련담당관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3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9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성이 정부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술직군의 명칭을 과학기술직군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8. 16. ~ 8. 2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서기관·기술서기관”을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대응총괄과·화재대응조사과·구조과 및 119구급과를”을 “대응총괄과·화재대응조사과·구조과·119구급과 및 구급역량개발팀을”로, “소방정”을 “소방정으로, 구급역량개발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의무사무관 또는 소방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7호, 제9호부터 제11호까지,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시·도 구급정책의 총괄·조정

⑥ 구급역량개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도 구급서비스 평가·환류에 관한 사항
2. 구급서비스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3. 구급대원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구급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구급대원 응급처치 교육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관리
6. 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및 이송병원 선정지침 개발·보급

• 운영

7. 소방관서 소속 공중보건의·구급지도의사의 운영 및 복무에 관한 사항

제4조제1항 중 “서기관·기술서기관”을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서기관·기술서기관”을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10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4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다.

제10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5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의4와 같다.

별표 3 일반직 계 39 다음에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소방정 2”를 신설하고,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소방정 2 다음에 “과학기술서기관·의무사무관 또는 소방령 1”를 신설하며,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소방정 2”를 삭제하고, “기술서기관·의무사무관 또는 소방령 1”를 삭제한다.

별표 3의2 중 소방령 “61”을 “64”로 하고, 소방경 “59”를 “60”으로 하며, 소방위 “60”을 “56”으로 하고, 일반직 계 39 다음에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소방정 2”를 신설하며,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소방정 2 다음에 “과학기술서기관·의무사무관 또는 소방령 1”를 신설하고,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소방정 2”를 삭제하며, “기술서기관·의무사무관 또는 소방령 1”를 삭제한다.

별표 4의2를 신설한다.

별표 5 중 총계 “463”을 “478”로 하고, 소방공무원 계 “388”을 “394”로 하며, 소방위 “64”를 “65”로 하고, 소방장 “74”를 “75”로 하며, 소방교 “93”을 “95”로 하고, 소방사 “85”를 “87”로 하며, 일반직 계 “75”를 “84”로 하고, 전문경력관 가군(항공조종담당) “24”를 “27”로 하며, 전문경력관 가군(항공정비담당) “11”을 “12”로 하고, 전문경력관 나군(항공조종담당) “18”을 “21”로 하며, 전문경력관 나군(항공정비담당) “10”을 “12”로 한다.

별표 5의4를 신설한다.

별표 6 2)의 평가기간란 중 “2023년 9월 30일”을 “2025년 9월 30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

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구급역량개발팀은 2026년 8월 31일까지 존속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구급역량개발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구급역량개발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119대응국의 119구급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3의2의 정원 7명(소방령 3명, 소방경 4명)은 2026년 8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9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3의2의 소방경 3명, 소방위 4명으로 본다.

-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4의2의 정원 1명(소방경 1명)은 2026년 8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9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4의2의 소방위 1명으로 본다.

- ③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5의4의 정원 1명(소방경 1명)은 2026년 8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9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5의4의 소방위 1명으로 본다.

중앙소방학교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1항 단서 관련)

총계	61
소방공무원 계	55
소방감	1
소방정	3
소방령	4
소방경	10
소방위	15
소방장	14
소방교	5
소방사	3
일반직 계	6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	1
공업주사 · 시설주사 · 방재안전주사 · 전산주사 · 방송통신주사 · 행정주사 또는 시설연구사	2
간호주사	1
방재안전서기 또는 행정서기	1
시설서기보 · 방재안전서기보 · 전산서기보 또는 행정서기보	1

중앙119구조본부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2항 단서 관련)

총계	478
소방공무원 계	394
소방감	1
소방정	7
소방령	24
소방경	41
소방위	64
소방장	75
소방교	95
소방사	87
일반직 계	84
행정주사 · 공업주사 · 항공주사 · 시설주사 · 방재안 전주사 · 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
전문경력관 가군(정보분석담당)	1
전문경력관 가군(항공조종담당)	27
전문경력관 가군(항공정비담당)	12
전문경력관 나군(정보분석담당)	2
전문경력관 나군(항공조종담당)	21
전문경력관 나군(항공정비담당)	12
전문경력관 나군(119구조견담당)	8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 · 혁신행 정법무담당관 · 보건안전담당관 및 교육훈련담당관을 두며, 기 획재정담당관은 소방준감 또는 소방정으로, 혁신행정법무담당 관 · 보건안전담당관 및 교육훈 련담당관은 <u>서기관 · 기술서기</u> <u>관</u> 또는 소방정으로 보한다.	제2조(기획조정관) ① ----- ----- ----- ----- ----- ----- ----- <u>과학기술서기관 · 서</u> <u>기관</u> -----.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조(119대응국) ① 119대응국에 <u>대응총괄과 · 화재대응조사과 ·</u> <u>구조과</u> 및 <u>119구급과</u> 를 두며, 대응총괄과장은 소방준감으로, 화재대응조사과장 · 구조과장 및 119구급과장은 소방준감 또 는 <u>소방정</u> 으로 보한다.	제3조(119대응국) ① ----- <u>대응총괄과 · 화재대응조사과 ·</u> <u>구조과 · 119구급과</u> 및 <u>구급역</u> <u>량개발팀</u> ----- ----- ----- -- <u>소방정으로, 구급역량개발팀</u> <u>장은 과학기술서기관 · 의무사</u> <u>무관 또는 소방령</u>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119구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u>시 · 도 구급서비스의 총괄 ·</u>	4. <u>시 · 도 구급정책의 총괄 · 조</u>

<u>조정 및 평가·환류에 관한 사항</u>	<u>정</u>
5.·6. (생략)	5.·6. (현행과 같음)
<u>7. 구급서비스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u>	<u><삭제></u>
8. (생략)	8. (현행과 같음)
<u>9. 구급대원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u>	<u><삭제></u>
<u>10. 구급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u>	<u><삭제></u>
<u>11. 구급대원 응급처치 교육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관리</u>	<u><삭제></u>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u>13. 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및 이송병원 선정지침 개발·보급·운영</u>	<u><삭제></u>
<u>14. 소방관서 소속 공중보건의·의료지도의사·구급지도의사의 운영 및 복무에 관한 사항</u>	<u><삭제></u>
15. ~ 18. (생략)	15. ~ 18. (현행과 같음)
<u><신설></u>	<u>⑥ 구급역량개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u>1. 시·도 구급서비스 평가·환류에 관한 사항</u>
	<u>2. 구급서비스 품질관리에 관한</u>

	<u>사항</u> 3. <u>구급대원의 양성 및 교육 · 훈련에 관한 사항</u> 4. <u>구급기술의 연구 ·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u> 5. <u>구급대원 응급처치 교육 및 프로그램의 개발 · 보급 · 관리</u> 6. <u>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 지침 및 이송병원 선정지침 개발 · 보급 · 운영</u> 7. <u>소방관서 소속 공중보건의 · 구급지도의사의 운영 및 복무에 관한 사항</u>
제4조(화재예방국) ① 화재예방국에 화재예방총괄과 · 소방분석제도과 · 위험물안전과 및 생활안전과를 두며, 화재예방총괄과장은 소방준감으로, 소방분석제도과장 · 위험물안전과장 및 생활안전과장은 <u>서기관 · 기술서기관 또는 소방정으로 보한다.</u>	제4조(화재예방국) ① ----- ----- ----- ----- ----- ----- ----- <u>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u> -----.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조의2(장비기술국) ① 장비기술국에 장비총괄과 · 소방항공과 · 정보통신과 및 소방산업과를 두며, 장비총괄과장은 소방	제4조의2(장비기술국) ① ----- ----- ----- -----

준감으로, 소방항공과장·정보통신과장 및 소방산업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소방정으로 보한다.

② ~ ⑤ (생략)

제9조(소방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소방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다.

②·③ (생략)

제10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중앙소방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단서 신설>

② 중앙119구조본부에 두는 공

----- 과
학기술서기관·서기관 -----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9조(소방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10퍼센트-----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다만,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4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다.

② -----

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u><단서 신설></u> ③ (생략)	-----. 다만,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 라 별표 5에 따른 총정원의 10 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의4와 같다. ③ (현행과 같음)
--	---

신 · 구정원대비표

[별표 3]

소방청 공무원 정원표(제9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u>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u> <u>또는 소방정</u>	· · <u><신 설></u>	· · <u>2</u>	+2
<u>과학기술서기관 · 의무사무관</u> <u>또는 소방령</u>	<u><신 설></u>	<u>1</u>	+1
<u>서기관 · 기술서기관</u> 또는 <u>소방정</u>	<u>2</u>	<u><삭 제></u>	-2
<u>기술서기관 · 의무사무관</u> <u>또는 소방령</u>	<u>1</u>	<u><삭 제></u>	-1
·	·	·	
·	·	·	

■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의2]

소방청 공무원 정원표(제9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소방령	<u>61</u>	<u>64</u>	+3
소방경	<u>59</u>	<u>60</u>	+1
소방위	<u>60</u>	<u>56</u>	-4
·	·	·	
·	·	·	
<u>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u> <u>또는 소방정</u>	<u><신 설></u>	<u>2</u>	+2
<u>과학기술서기관·의무사무관</u> <u>또는 소방령</u>	<u><신 설></u>	<u>1</u>	+1
<u>서기관·기술서기관</u> 또는 <u>소방정</u>	<u>2</u>	<u><삭 제></u>	-2
<u>기술서기관·의무사무관</u> <u>또는 소방령</u>	<u>1</u>	<u><삭 제></u>	-1
·	·	·	
·	·	·	

[별표 5]

중앙119구조본부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2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463	478	+15
소방공무원 계	388	394	+6
소방위	64	65	+1
소방장	74	75	+1
소방교	93	95	+2
소방사	85	87	+2
일반직 계	75	84	+9
전문경력관	24	27	+3
가군(항공조종담당)	11	12	+1
나군(항공조종담당)	18	21	+3

전 문 경 력 관	<u>10</u>	<u>12</u>	+2
나군(항공정비담당)	.	.	